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일,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정애의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 복지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중)

개정안은 전달 방식과 관계없이 구매자가 사전에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신설 등).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를 포함하여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과 거래 이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대면 확인 의무는 현재 시행규칙상 ‘영업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지도와 준수 의무 인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대면 확인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관행에 대한 규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안이나,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법 내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들과 그 태양(態樣)을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동물보호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실험 중지 요구 불응이나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부과되며, 노화·질병 동물의 유기 목적 거래 등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대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러한 기존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면 확인 의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의 이행 실태와 현행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